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1나420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1나420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219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1. 12. 17.

판결선고 2022. 1.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219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대 519㎡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519㎡ 중 1/6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11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양도소득세 채권)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